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18
------	-------

제출년월일 : 2017. .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지방 보훈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하고, 조항과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는 등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마포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서울지방 보훈청장'을 추가
(안 제3조)
- 나. 조항과 조문의 용어 순화 및 현행 상위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정비
(제명, 안 제1조 내지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및 같은 법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생략

- 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3)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 권고사항 있음

평가대상	권고사항	조치사항
제3조 (구성)	<p>※ 가정복지과 권고안</p>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 1명, 부의장 4명을 포함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 권고사항 '미반영'</p> <p>- 통합방위협의회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는 국토방위 및 통합방위 작전을 지원·협력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문성과 경험 등에 비중을 두고 협의회 위원을 구성·운영해야 하고, 해당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 부족과 더불어 통합방위 지원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성별 위촉비율을 특정한다면 협의회 구성과 정상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의견은 타당하지 않음.</p>

4)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5)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를 “「통합방위법」 제5조”로,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방위협의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 부의장 4인을 포함한 60인”을 “1명, 부의장 4명을 포함한 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마포구 부구청장과 군부대장, 경찰서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과 육군 제3537부대 1대대장, 마포경찰서장”으로,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제3조제3항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울지방 보훈청장

제3조제3항제15호(중전의 제1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위촉직위원은”을 “위촉직 위원 임기는”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의장의 직무등)”을 “(의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의장은 부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대행할”을 “수행할”로, “그”를 “수석부의장이 그”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실무위원회 구성·운영등)”을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업무를 담당 하는”을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협의회에 부의할”을 “협의회 회의에 부칠”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회의등)”을 “(회의 등)”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방위협의회

제10조제1항 중 “마포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방위지원본부상황실”을 “지원본부 상황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별표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그 밖에 지원본부”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지원본부”를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위지원본부”를 “지원본부”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사항외”를 “사항 외”로, “관하여 기타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 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u></p>	<p><u>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통합방위법</u> (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u>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u>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통합방위법</u>」 제5조----- 제22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방위협의회</u>----- ----- -----.</p>
<p>제2조(기능) <u>협의회</u>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략)</p> <p>4. <u>기타</u>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p>	<p>제2조(기능) <u>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방위협의회</u>(이하 “협의회”라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 -</p>
<p>제3조(구성) ① <u>협의회</u>는 의장 1인, 부의장 4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의장은 <u>마포구청장</u>으로 하고, 부의장은 <u>마포구 부구청장</u>과 <u>군부대장, 경찰서장 및 위촉직 위원</u> 중 의장이 선임하는 1인으로 한다.</p>	<p>제3조(구성) ① ----- 1명, 부의장 4명을 포함한 60명 ----- -----.</p> <p>② ----- <u>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u>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u>서울특별시 마포구 부구청장</u>(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과 <u>육군</u></p>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 7. (생략)

<신설>

8. ~ 13. (생략)

14.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④의장, 부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
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제4조(간사) ① (생략)

제5조(의장의 직무등) ① (생략)

②부의장은 부구청장을 수석부의
장으로 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등) 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협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
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제3537부대 1대대장, 마포경찰서
장 -- 1명--.

③ -----
사람으---.

1. ~ 7. (현행과 같음)

8. 서울지방 보훈청장

9. ~ 14. (현행 제8호부터 제13호
까지와 같음)

15. 그 밖에 -----
사람

④ -----
- 해당 ----- 위
촉직 위원의 임기는 -----
-----.

제4조(간사) (현행 제1항과 같음)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부구청장-----

----- 수행할 ----- 수석
부의장이 그 --.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
-----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
는 -----.

1. 협회의 회의에 부칠 -----
-

2.·3. (생략)

② (생략)

제8조(회의등) ① ~ ③ (생략)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 민방위협의회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포구청장과 동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된다.

②통합방위지원본부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대표로 구성하되, 구는 지하 종합상황실에 지원반을 설치·운영하고 동은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한다.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

----- 각 호 -----
--.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방위협의회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 구청장-----
-----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

-----.

② 지원본부 상황실-----

-----.

③지원본부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
반의 구성은 구는 별표1, 동은 별
표2와 같다.

④기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법제
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
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
제1항의 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
치 운영한다.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
항) ①법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통합방위본부장이 지정한 취
약 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
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③ -----
----- 별표 1----- 별표 2-----
-.

④ 그 밖에 지원본부-----
----- 필요한-----
-----.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지원본부-----
-----.

② -----
-- 지원본부-----
-----.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
항)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
에 따라 -----

-----.

1. ~ 4.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세칙) ----- 사
항 외----- 필요한-----

-----.